



등록번호	기획감사실-16359
등록일자	2017. 11. 06.
결재일자	2017. 11. 06.
공개구분	비공개(5,6)

주무관	감사계장	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 2017.11.6 원안결재
협조자				

공금관리 운용실태 감찰결과 보고

요 약

■ 감찰개요

- 감찰기간 : 2017. 9. 22. ~ 10. 20.(15일간)
- 감찰대상 : 전 부서(구 본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 감찰범위 : 2017. 9월 현재 전 부서 명의 보통예금 통장 전체
- 감찰반 : 감사계장 외 3명

■ 감찰결과

- 행정상 조치 : 33건(시정 29, 주의 4)

본처분			현지처리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13	11	2	20	18	2

- 재정상 조치 : 22건 36,982천원(세입 36,036, 지급 946)
- 신분상 조치 : 34명(훈계 16, 주의 18)
- 개선과제 : 1건(공금계좌 잔액 점검 확인의 날 운영)



수 영 구
(기획감사실)

목 차

1. 감찰개요	1
2. 감찰결과	2
3. 종합평가	2
4. 주요 지적사례	3
5. 개선과제	6
6. 조치계획	7

<< 별첨 >>

1. 처분지시일람표
2. 감찰결과처분요구서
3. 현지처리요구서
4. 문책공무원 조서

공금관리 운용실태 감찰결과 보고

2017. 9. 22. ~ 10. 20.(15일간) 실시한 공금관리 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감찰결과 보고임.

1 감찰개요

- 감찰기간 : 2017. 9. 22. ~ 10. 20.(15일간)
- 감찰대상 : 전 부서(구 본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 감찰범위 : 2017. 9월 현재 전 부서 명의 보통예금 통장 전체

* 부서 공금통장 개설현황

용 도	계좌수	세부내용
계	104	
일상경비, 공공요금	33	카드대금, 전기·수도요금 자동이체 등
기금관리용	5	각종 기금관리 보통예금
행정업무용	23	당직비, 선거사무, 지방세, 이웃돕기성금 등
민원업무용	29	민원24, 정보공개, 대학민원, 정부양곡대금 등
세외수입금 수납용	9	사용료, 과태료, 재활용품판매대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5	세입세출외현금, 부가가치세

- 감찰반 : 감사계장 외 3명
- 중점감찰내용
 - ▶ 부서명의 공금계좌 개설 및 사용의 적정 여부
 - ▶ 장기간 미사용 계좌(휴면계좌) 방치 여부
 - ▶ 공금통장 인감 관리 적정 여부
 - ▶ 공금통장 사적 사용 및 공금 횡령·유용 여부 등

2 감찰결과

- 행정상 조치 : 33건(시정 29, 주의 4)

본서분			연시처리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13	11	2	20	18	2

- 재정상 조치 : 22건 36,982천원(세입 36,036, 지급 946)

본서분(건수/천원)			연시처리(건수/천원)		
계	세입조치	지급	계	세입조치	지급
11/36,211	8/35,265	3/946	11/771	11/771	-

- 신분상 조치 : 34명(훈계 16, 주의 18)
- 개선과제 : 1건(공금계좌 잔액 점검 확인의 날 운영)

3 종합평가

- 이번 감찰은 각 부서에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금계좌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공금계좌 적정 관리를 통한 회계오류 및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간 미사용 공금계좌를 정리하여 공금관리의 적정 운용과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그 결과 공금 횡령·유용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여러 명의 담당자가 같은 공금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입출금 내역이 혼재되어 총괄 관리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공금계좌로 입금된 각종 수납금의 세입 조치 소홀, 부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회계처리 및 공금계좌 인감 등록 부적정, 장기 미거래 공금통장 정리 미조치 등 총 33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되었음.

- 특히 각종 수납금의 세입 처리 지연 및 장기간 보관·방치사례, 부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출품의 누락으로 대납 처리한 사례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공금관리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의식 부족과 관리자의 지도감독 소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전 부서에서는 향후 부서 법인카드 및 공금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감독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 주후 부서별 공금계좌 총괄 담당자 및 관리자에 대해서도 통장잔액 처리 지연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의 연대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예정임.

4 주요 지적사례

Ⅰ 사례 1 | 각종 수납금 세입 처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세입예산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하며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되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근거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제34조(예산중계주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22조(수납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

↳ 각종 반납(환수)금 등 세입 처리 지연(최장 461일) 및 장기간 보관·방치 : ○○과 외 9개 부서

I 사례 2 | 부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회계처리 부적정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는 ① 품의(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 ② 원인행위(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 ③ 지출(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로 이뤄지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 ↳ 부서 신용카드이용 결제대금을 카드결제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거래처로 잘못 이체하여 결제일 이후 반납(880,000원) 조치 : ○○과
- ↳ 부서 신용카드이용 결제대금 입금 처리 지연 및 입금 미조치 : ○○○○○과
- ↳ e-호조시스템 지출승인 처리 지연으로 부서 신용카드이용 결제대금 사비(622,933원)로 대납 처리 : ○○○○○과
- ↳ e-호조시스템 지출품의 누락 등으로 부서 신용카드이용 결제대금 사비(540,238원)로 대납 처리 : ○○○○○과

I 사례 3 | 공공요금 예산 지출 처리 소홀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 ↳ 관리시설물에서 사용한 상수도요금(1개월분, 363,760원) 예산 미지출 : ○○○○○과

Ⅰ 사례 4 | 공금계좌(통장) 현금 인출 부적정

- 구금고는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지급명령 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른 경우와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제109조(지급절차), 제113조(지급의 거부)

↳ 근무자 수당(현금) 지급을 위한 공금계좌(통장) 현금인출카드 개설·사용 : ○○○○과

Ⅰ 사례 5 | 공금계좌(통장) 인감 등록 부적정

- 구금고는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른 경우와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지급을 거부하여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부서 관리 공금계좌 인감 등록시 회계관직 관인과 출납원의 사인을 병행 등록토록 하였다.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제104조(인감의 상호제출), 제113조(지급의 거부)
「부서통장 관리실태 일제 조사결과 알림」, 기획감사실-7406(2013.6.19.)호

↳ 공금계좌(통장) 인감 등록시 회계관직 관인만 등록(9개 통장) : ○○과, ○○○○과, ○○○○과, ○○○○과

↳ 공금계좌(통장) 인감 등록시 사인(계인)만 등록(2개 통장) : ○○과

Ⅰ 사례 6 | 장기 미거래 공금계좌(통장) 정리 미조치

- 우리 구에서는 공금계좌(통장)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장기간 거래내역이 없는 통장은 계좌해지를 통해 정리하도록 하였다.

근거 「부서통장 관리실태 일제 조사결과 알림」, 기획감사실-7406(2013.6.19.)호

↳ 미거래 공금계좌(통장) 미해지(3개 통장) : ○○○○과, ○○○○과, ○○○○과

Ⅰ 사례 7 | 공금계좌(통장) 이자 발생분 세입 미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세입예산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고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또한,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근거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 공금계좌(통장) 이자 발생분(11개 통장, 694,800원) 세입 미조치 :
○○과 외 8개부서

5 개선과제(1건)

Ⅰ 개선과제 1 | 전 부서 ☞ 자체 추진

공금계좌(보통예금통장) 잔액 점검 확인의 날 운영

□ 현황 및 실태

- 각 부서에서 개설·관리하고 있는 공금계좌가 100여개가 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적정 운영 관리에 대한 점검 필요
- 공금 적기 처리 지연에 따른 부서통장 잔액 과다 관리 시, 비리발생 개연성 증가

□ 문제점

- 여러 직원들이 같은 공금통장을 사용함에 따라 입출금 내역이 혼재되어 총괄 관리의 어려움 상존
- 입출금에 대한 통장기록 미기재로 장시간 경과후 출처 파악 곤란
- 공금통장에 입금된 각종 수납금 세입 지연 처리로 잔액 관리 애로

□ 개선대책

○ 공금계좌 잔액 점검 확인의 날 운영

▷ 운영시기 : 월 1~2회 정도

▷ 운영방법 : 담당계장(출납원) 책임하에 공금계좌 잔액 출처 파악

▷ 운영내용

- 세입 미조치 수납금 세입 즉시 조치 ☞ 통장 잔액 최소화

- 공금계좌의 적정 운용 관리를 위한 용도별 계좌개설 검토 추진

* 공금계좌 개설시 청백e-시스템에 계좌번호 및 개설용도 등록 철저

6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감사에 지적된 총 33건에 대하여

▶ 내용이 경미한 20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현지처리

▶ 본처분 13건은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엄중 주의 촉구 및 직무교육 실시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7. 12. 22.(금)까지 제출

- 구체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붙임 "처분요구서"에 의하여 처리

■ 재정상 조치

● 22건 36,982천원은 처분요구에 따라 세입(여입) 및 지급 조치

■ 신분상 조치

● 문책대상자 34명은 자체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치

▶ 훈계 16명, 주의 18명(타기관 이첩 2명 포함)

■ 개선과제

● 전 부서는 “공금계좌 잔액 점검 확인의 날” 자체 운영

▶ 향후 우리 실에서 일상경비 검사 또는 감사시 이행실태 점검 예정